

대구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7나253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7나2532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13 선고 2015가합706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수호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B

2. C협동조합

3. D협동조합

4. E협동조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배재현

변론 종결2018. 10. 4.

판결 선고2018. 11. 8.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13. 선고 2015가합706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피고 C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D협동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 E협동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30. 접수 제15451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같은 법원 2015. 9. 30. 접수 제1545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1,186,298,486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186,298,4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4행의 "갑 제1 내지 12"를 "갑 제1 내지 1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1행의 "2014. 11. 14.자 이사회결의"를 "2014. 11. 11.자 이사회결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1쪽 11행부터 14행까지의 "을 제1호증의 기재 ... 뒷받침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호증[2015. 6. 11.자 F 이사회 회의록, 4쪽(원고가 당일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가 중간에 퇴장하는 바람에 그 회의록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지만, 대표이사 G, 이사 S, 감사 V의 서명날인은 되어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F 이사회 의장 G가 2015. 6. 11.자 이사회가 개최되기 전 어느 날에

원고에게 "R의 잔대금 지급이 없으면 재산분배에 관한 기존 이사회결의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원고도 "R에서 잔금이 안 들어오고 계약이 파기되면 의결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고 말하여 R의 잔대금 지급이 없으면 재산분배에 관한 기존 이사회결의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수긍한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20행의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또한, "F이 2014. 6. 24.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4,000만 원은,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281,647,970원의 원금 채권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1884호 사건의 조정조서(갑 제40호증, 이하 '관련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에 기한 원금 3,000만 원 채권을 하나의 채권으로 계산한 후 그 중 원금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로써 F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8, 39, 4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F은 2014. 6. 19.경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을 R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받은 후 2014. 6. 20. O에 5억 원을, 2014. 6. 23. F의 이사 S에게 2억 원을, 2014. 6. 24.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에 3억 원을, 2014. 6. 24.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갑 제40, 41, 4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F이 2014. 6. 24. 원고에게 지급한 위 4,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관련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하나의 채권으로 보고 그 중 원금 일부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과 별개로 관련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F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3,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F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F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위와 같이 관련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관련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F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1884호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0. 8. 30. 위 사건에서 "1. 원고는 F에게 회사 운영자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10. 9. 10.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은 2010. 10. 10.까지 지급한다... 2. 단, F은 위 돈을 2011. 1. 31.까지 변제하되, 위 돈에 대한 월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기한에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앞서 본 관련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F은 2010. 9. 29. 원고로부터 관련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관련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5,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제1항의 조정조항을 이행한 것으로 하고, 그 3,000만 원은 2011. 1. 31.까지 월 1.2%를 가산하여 변제하되, 그 기한 전이라도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위 돈을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4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가 F에게 지급한 위 3,000만 원에 대한 2010. 9. 29.부터 위 4,000만 원이 지급된 2014. 6. 24.까지 월 1.2%(연 14.4%)로 계산한 이자는 합계 16,143,781원[30,000,000원 × 0.144 × (3년 + 269일/365일)]이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각 대여금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2007. 7. 3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0. 9. 29. 관련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 위 3,000만 원과 이자를 이 사건 각 대여금보다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을 R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받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에 우선하여 관련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를 제외하고 F이 R로부터 받은 위 토지매매 계약금 10억 원을 분배하여 지급한 곳은, 이 사건 토지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받은 O,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전에 체결되었던 매매계약 관련 위약금 내지 계약금을 변제받은 S와 W 뿐이고, 위 S, G, T, U 등 원고와 마찬가지로 F에게 자금을 대여한 F의 이어나 주주 가운데 그 대여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위 계약금을 분배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관련사건 조정조서 변제금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F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주나 이사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받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F은 2014. 4. 내지 같은 해 6.경 '총 차입금 금액 및 이자'라는 계산서(갑 제42호증, 이하 '2014년 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도 교부하였는데, 그 계산서 중 원고의 차입금 부분에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는 "2007년 281,647,970원"이라고 기재하고 관련사건 조정조서 변제금에 관하여는 그와 별도로 "2010년 3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와 관련사건 조정조서 변제금 채무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F이 그 무렵인 2014. 6. 24. 원고에게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관련사건 조정조서 변제금 채무와 합하여 이를 하나의 대여금 채무로 생각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함과 아울러 그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의사로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F의 대표이사 G가 R로부터 받은 위 토지매매 계약금 10억 원의 지출내역을 정리한 'R 계약금 입출금 내역 및 지출내역' 문서(갑 제43호증)에 2014. 6. 24. 원고에게 지급한 위 4,000만 원에 관하여 "06월 24일 주주 A(원고) 가수금 지급 ₩4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관련사건 조정조서에 원고가 F에게 회사 운영자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 따라 F에게 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R 계약금 입출금 내역 및 지출내역' 문서를 작성한 G로서는 위 3,000만 원과 그 이자도 F의 이사인 원고가 F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고 '가수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R 계약금 입출금 내역 및 지출내역' 문서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위 4,000만 원이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⑤ F은 2014년 4월 내지 같은 해 6월경 앞서 본 2014년 계산서(갑 제4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4. 6. 24. 원고에게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5. 9.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B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7.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 집계 현황표(갑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2014년 계산서 중 원고에 대한 '차입금 금액(원금)'란에는 "2007년 281,647,970원, 2010년 30,000,000원, 합계 311,647,970원", '이자금액'란에 "합계 556,869,811원"이 기재되어 있음에 비해, 2015년도에 작성된 대여금 집계 현황표 중 원고의 대여금에 관한 '원금'란에 "271,600,000원", '이자금액'란에 "67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F이 2014. 6. 24. 원고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이 원고의 F에 대한 대여금 원금 합계 311,647,970원이나 또는

관련사건 조정조서 변제금 원금 3,000만 원과 이 사건 각 대여금 원금 중 1,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그 후 원고의 대여금 원금 합계가 271,600,000원(311,647,970원에서 40,000,000원을
빼면 271,647,970원이 되지만 편의상 십만 원 미만 금액을 버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이 남게 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위와 같은 대여금
집계 현황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만으로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이익의 포기 의사로 그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임영우

판사정성욱

별지